



# 참가안내

## 신청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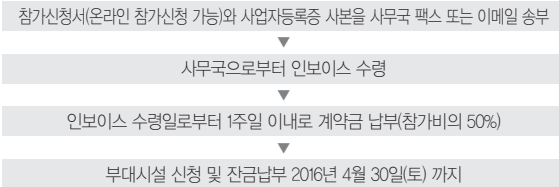
2016년 4월 30일(토)까지 ※부스 소진시 조기 마감

## 부스사용료

	조기신청	일반신청
	2016년 3월 11일(금)까지 (계약금 납입 기준)	2016년 4월 30일(토)까지
독립부스(9㎡)	770,000원/부스	1,100,000원/부스
기본부스(9㎡)	1,070,000원/부스	1,400,000원/부스
프리미엄부스(18㎡)	2,540,000원/부스	3,200,000원/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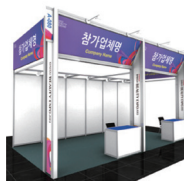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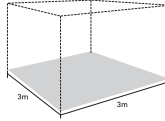
※부가세 별도

## 부스 신청방법 및 납입방법



※부스배정 : 참가신청 접수순, 신청면적, 전시품 성격에 의거 주최측에서 배정(참가규정 제3조 부스배정 참고)

## 부스안내



※상기 이미지는 실제 이미지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독립부스

전시자가 주최자로부터 전시면적만 제공받아 운영 업체를 선정하여 전시 장치를 설치 및 장식을 자체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2부스 이상 시공

### 기본부스

전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최자가 조립식으로 된 부스장치를 일괄적으로 시공하는 부스

벽체간막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기본조명(형광등2개, 스포트라이트3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업체당), 전기 1kw(업체당)

### 프리미엄부스

기본부스와 독립부스의 중간 형태로 저비용으로 독립부스의 효과를 낼 수 있는 패키지 부스

벽체간막이, 바닥 파이텍스, 상호간판, 부스번호, 전기배선(2구, 콘센트2개), 기본조명(형광등4개, 조명등6개), 안내데스크/의자 1조(업체당), 상담테이블 세트(업체당), 전기1kw(업체당)  
※2부스 이상 시공

# 전시회 참가규정

## 제1조 용어의정

1. '전시자'라 함은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
2. '주최자'라 함은 '대구광역시'를 말한다.
3. '주관자'라 함은 'EXCO'를 말한다.
4. '전시회'라 함은 '2016 대구뷰티엑스포(DAEGU BEAUTY EXPO 2016)'를 말한다.

## 제2조 참가신청

1. 전시회 참가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1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6년 4월 30일(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장 면적이 소진된 경우 또는 출품예정 품목이 전시회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를 거부 할 수 있으며 또한 참가신청 접수 후에도 전시회 사정에 따라 15일 이내에 참가 신청과 참가계약금 등 기납부금을 반납할 수 있다.
3. 전시자는 이미 제출한 참가신청서, 기술지원신청서 등 제반 제출 서류의 내용에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주관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하며, 미통보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전시자가 책임을 진다.

## 제3조 부스배정

1. 주관자는 참가신청 접수, 참가비 입금순, 신청면적, 전시품의 성격 및 기타 합리적인 방법에 의거하여 전시자별 부스위치를 배정하며 전시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주관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장기간 이전이면 전시자에게 배정된 부스위치 및 면적을 전시자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전시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관자의 요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 제4조 전시장 관리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배치하여 자사 부스(booth)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참가신청서에 명시한 전시품과 상이한 물품을 전시하거나 전시회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물품을 전시할 경우 주관자는 즉시 중지, 철거 또는 반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비는 반환되지 아니하며, 전시자는 이에 따른 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3.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특정인의 전시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시자는 주관자의 서면 동의 없이 배정된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 전매 또는 상호간 교환할 수 없다.
5. 전시자는 전시장의 바닥, 천장, 기둥, 벽면 등에 페인트칠 등 원상변경을 할 수 없으며 전시장의 손상에 대해서는 주자관의 원상회복 요청 등에 따라 적절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6. 주관자는 질서유지와 안전관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의 예방 등을 위하여 전시 품목, 전시 행위 등을 선택적으로 배제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 제5조 참가비 납입 조건

1.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제출 후 사무국으로부터 인보이스를 수령하고 1주일 이내에 참가비의 5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납입해야 하며, 잔금 50%는 2016년 4월 30일(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2. 전시자가 잔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참가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시자는 이미 납입한 참가비에 대해 반환을 청구 할 수 없다.
3. 전시자가 참가비, 기술 지원비 등 제반비용 미납 시, 주관자는 완납 시까지 선택적으로 전시자의 전시품을 유치 할 수 있다.

## 제6조 전시자의 참가취소

1. 전시자가 참가신청서 제출 후, 참가 취소할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서면으로 취소 통보를 해야 하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참가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해야 한다.
  - 2016년 3월 21일 이전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5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6년 3월 22일 ~ 4월 30일 기간 중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80%를 위약금으로 납부
  - 2016년 5월 1일 이후 참가취소 : 총 참가비의 100%를 위약금으로 납부
 - 위약금은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다.
2. 본조 1항의 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까지 수령된 경우 주관자는 전시자로부터 받은 참가비 중 참가계약금을 제외한 기 납부 참가비를 취소한 전시면적에 따라 전시자에게 환불한다. 그렇지 아니하고, 동 취소통보가 전시회 개최일 전 2개월 후에 주관자에게 수령된 경우, 환불을 하지 아니한다.
3.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7조 전시회의 취소 또는 변경

주관자가 전시회 개최를 취소하는 경우, 이미 납입된 참가비 잔액을 전시자에게 반환한다. 다만 불가항력, 기타 주최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특별한 사정으로 전시회가 취소 또는 개최일이 변경되거나 축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이 경우 전시자는 주관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 제8조 전시품 진열 및 홍보활동

1. 전시자는 배정된 전시면적 내에 지정 기간 내에 장치 및 전시품 반입, 진열을 완료하여야 하며,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8시까지 전시품진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주관자는 해당 전시자의 참가를 임의 취소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전시자는 참가신청서 상에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주관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으며, 신청한 품목외의 전시품을 홍보하거나 판매할 경우 주관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제9조 전시품 및 장치물 반출

전시자는 지정기간 내에 모든 전시품 및 장치물을 반출하여야 하며, 반출을 지연할 경우 주관측이 부담하게 될 제반비용을 즉시 주관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 전시장 경비, 위험부담 및 보험

1. 주관자는 전시자 및 방문객을 위하여 적절한 경비 조치를 한다.
2. 전시자는 전시기간 및 장치, 철거 기간 중 발생하는 배당면적내의 장치물 및 전시품에 대한 훼손 및 도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전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화재, 도난, 파손 기타 사고를 발생하게 하여 주최 · 주관자 또는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전시자가 전적인 배상 책임을 지며, 전시품 등에 대한 보험경비 역시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 제11조 방화규칙

1. 장치물 및 전시장내의 모든 자재는 소방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한다.
2. 주관자는 필요에 따라 전시자에게 화재 방지와 관련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 제12조 보증규정

1. 주관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증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2. 보증되는 규정은 참가규정의 일부가 되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3. 전시자는 주관자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13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의 해석에 관하여 주최 · 주관자와 전시자에게 발생하는 쟁반 간의 권리, 의무에 관한 분쟁은 주관자 관할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